

법무매거진

與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법조계 “위헌 소지 높다”



-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에 우려 목소리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 16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안 가결됐다. 여당은 이달 10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제30조의2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을 신설해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1.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

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됐다(제30조의3)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언론사에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외에 일반적 언론보도와 관련된 손해배상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보도에 이르게 된 경우,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해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조항(제30조 2항)도 넣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토록 했다.

현재는 언론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손해배상 5배 부과는 언론의 자유 과도하게 위축, 고의·중과실 추정은 입증책임 법리와 전혀 맞지 않아

법조계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김한규(51·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일반 불법행위책임 법리에 의하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사실상 언론사에 전가하는) 이례적인 입법’이라고 말했다. 또 “손해배상을 5배까지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

게 위축시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국언론법학회장을 지낸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조차 언론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며 “호주는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 일부 주(州)도 정정보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과 관련해 법인 등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특정한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은 전통적인 입증책임 법리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입증책임 전환은 의료 소송이나 환경소송처럼 원고의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과연 그러한 정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3가지 사안에 대한 우려의 이유와 논리가 합리적으로 인정돼 수정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당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해 입증주체의 모호함을 없애고,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법률신문)